

* 과적으로 인한 도로구조물파괴 됨은 국민모두가 피해자입니다,
 **

협 조 전

귀사의 사업이 일익번창 하심을 양축하오며 폐사가 보내주신 성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

다름이 아니옵고 과적 단속이 강화되어 과적위반 사례가 증가됨에 따라 과적방지를 위하여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고 안정된 운송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.

차량 제원	도로법 기준	별 칙	양 별 규 정	비 고
길 이	16.7m	-도로법 제 82조별칙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도로법54조(운행제한) ③생략~ 차량의 화물적재를 사실 상 관리하는 자는 임차한 화물적재량이 제1항의 규 정에 의한 운행제한을 위 반하여 운행되지 아니하 도록 관리하여야 한다.	- 도로법 제 86조별칙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. 사 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 무에 관하여 차량의 운 행제한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그 행위자를 벌 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처벌 을 합니다.	-20피트 컨테이너의 중량이 -40피트컨테이너보다 더 무겁다는 것은 상식 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. -20피트 컨테이너는 중량물 전용이며 -40피트 컨테이너 용적(부피)전용 이라는 것 을 알아야 합니다.
너 비	2.5m			
높 이	4.0m			
총중량	40톤			
축중량	10톤			

- 아 래 -

※ 총 중량 : 40톤 - 공차평균17톤(Tractor+Chassis+Contr) = (화물)중량 23톤미만 이어야합니다.

※ 축 중량 : Tractor/1/2/3축 Chassis/4/5축 이 있으며 하나의 축이 10톤이 넘으면 과적 입니다.

상기 내용을 참고 하시어 이후 과적위반이 발생되면 귀사의 책임임을 알려 드립니다.
 아울러 과적위반이 발생치 않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 다시 한 번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년 월 일

회사 :

주소 :

대표이사:

[직인생략]

귀 중